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25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김수흥·김윤덕·고용진

김진표 • 박재호 • 허 영

이용선 • 안규백 • 전용기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2010년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 중일부가 누락되어, 국세청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주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없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 자 함(안 제10조제9호·제10호 및 제56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및 제10호 중 "신청인이"를 각각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로 한다.

제56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한 주류
- 3. 제40조의2에 따른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51조에 따른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신청하거나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 | 제10조(면허의 제한) |
|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 |
|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 | |
| 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 | |
| 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 |
| 있다.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면허 <u>신청인이</u> 금고 이상의 | 9 <u>신청인이 「조세범 처</u> |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u>벌법」,「식품위생법」 또는</u>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
|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 |
|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 |
| 지 아니한 경우 | |
| 10. 면허 <u>신청인이</u> 금고 이상의 | 10 <u>신청인이 「조세범 처</u>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벌법」,「식품위생법」 또는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
| | |
| 11. ~ 13. (생 략) | 11. ~ 13. (현행과 같음) |
|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 제56조(과태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 |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가.·나. (생 략)

<신 설>

<u>다.</u> (생 략)

<신 설>

<u>3.</u> (생 략) <u><신 설></u>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한 주류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3. 제40조의2에 따른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u>자</u>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5. 제51조에 따른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